



유럽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산란계 케이지 사용이 금지되면서 동물복지사육은 세계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형 케이지로는 개방형 계사(Aviary)와 엔리치드 케이지(Enriched cage), 계사 내 평사 사육 방식, 계사 외부 방사 사육 방식 등이 있습니다.



평사사육



방사사육



개방형 계사(Aviary)



Enriched cage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육 면적

사육 면적은 사육장소 1㎡당 산란계 9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의 경우 다단 구조물을 포함한 이용 가능 면적은 1㎡당 9수 이하, 바닥면적은 1㎡당 17수 이하여야 합니다. 즉, 다단 구조물을 사용할 경우 각 단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사육 수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축사 면적 제곱미터당 사육 수수를 17수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② 햇대

햇대는 산란계 1수당 최소 15cm 이상 제공해 줘야 합니다. 굵기는 직경 3~6cm, 햇대 사이의 간격은 최소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서 닭의 본능적인 행동표출을 위해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햇대인데, 수당 15cm 햇대제공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이번 개정을 통하여 햇대제공에 대한 내용이 완화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슬랫구조물을 해로 일부 인정함으로써 필요한 햇대의 80%까지 슬랫구조물(수당 460cm²)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산란계 농가에서는 수당 적정 슬랫구조물을 사용할 경우 실제 필요한 햇대의 약 20%만 추가로 설치하면 됩니다.

③ 산란상

산란계 7수당 산란상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을 제공하거나, 산란계 120수당 1m³ 이상 산란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④ 환경관리

축사내부의 암모니아 농도는 10ppm 미만이 이상적이며 25ppm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CO₂ 농도는 5,000ppm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⑤ 바닥재

모든 산란계사는 전체면적의 최소 1/3 이상 깔짚으로 덮여있어야 합니다.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면 교체 또는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⑥ 조명

매일 10룩스(lux) 이상의 조명을 최소 8시간 이상 제공해야 하며, 최소 6시간 이상 암기(暗期, 어두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란계 사육과는 다르게 동물복지에서는 인위적인 조명관리를 따로 하지 않으나, 낮 동안 먹이활동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 조명 시간과 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⑦ 급이, 급수기

사료급이기 형태에 따라 선형 사료급이기(linear track)는 10cm, 원형 급이기는 4cm의 수수별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급수기 형태별로 니플과 컵형은 산란계 10수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급수공간은 닭 1수당 선형은 2.5cm, 원형은 1cm 이상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⑧ 방사사육

방사사육에 대한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방사사육을 표기하기 위한 추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외 방목장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1수당 1.1m²의 공간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 기준의 내용들을 충족하는 산란계농장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